

**(19) 대한민국특허청(KR)**  
**(12)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공보(A)**

(51) Int. Cl. <sup>6</sup> A61K 31/47	(11) 공개번호 특 1995-0703342	(43) 공개일자 1995년 09월 20일
(21) 출원번호	특 1995-0701033	
(22) 출원일자	1995년 03월 17일	
번역문제출일자	1995년 03월 17일	
(86) 국제출원번호	PCT/JP 94/001222	(87) 국제공개번호 W0 94/006735
(86) 국제출원출원일자	1994년 07월 25일	(87) 국제공개일자 1994년 03월 31일
(81) 지정국	EP 유럽특허 : 오스트리아 벨지움 스위스(리히텐슈타인)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영국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 델란드 포르투갈 스웨덴	
	국내특허 : 호주 캐나다 대한민국 미국 중국	
(30) 우선권주장	93-185973 1993년 07월 28일 일본(JP)	
(71) 출원인	오스카 세이야꾸 가부시끼가이샤 오스카 아끼아꼬	
	일본국 도오교도 치요다구 간다쓰가사쵸 2쵸메 9	
(72) 발명자	기무아 유조	
	일본국 도꾸시마켄 도꾸시마시 미나미쇼마찌 4-33-10	
	이시가와 신이찌	
	일본국 도꾸시마켄 이다노군 기다지마쵸 신기라이 아자히가다 1-3	
	마쓰다 요시도	
	일본국 도꾸시마켄 이다노군 마쓰시게쵸조 사사기노아자 하지가미 57-1	
(74) 대리인	남계영	

**심사청구 : 없음**

**(54) 수용액**

**요약**

1.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; 본 발명은 물에 대해 용해하기 어려운 약염기성화합물을 포함하고 약제에 유용한 수용액에 관한 것이다.
2.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; 본 발명의 목적은 유효성분의 활성성분으로서 6-[3-(3,4-디메톡시벤질)아미노-2-히드록시프로폭시]카르보스티릴 또는 그 염과 용해보조제로서 DL-락트산 및 임의의 종래의 첨가제로 구성된 수용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
3.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; 6-[3-(3,4-디메톡시벤질)아미노-2-히드록시프로폭시]카르보스티릴 또는 염을 유효성분으로서 함유하고 다시 또 용해보조제로서 DL-락트산과 종래의 첨가제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액.
4. 발명의 중요한 용도; 본 발명의 목적은 유효성분의 활성성분으로서 6-[3-(3,4-디메톡시벤질)아미노-2-히드록시프로폭시]카르보스티릴 또는 염과 용해보조제로서 DL-락트산 및 임의의 종래의 첨가제로 구성된 수용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]

**명세서**

[발명의 명칭]

수용액

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

**(57) 청구의 범위**

**청구항 1**

6-[3-(3,4-디메톡시벤질)아미노-2-히드록시프로폭시]카르보스티릴 또는 염을 유효성분으로서 함유하고

다시 도 용해보조제로서 DL-락트산과 종래이 첨가제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액.

#### 청구항 2

제1항에 있어서, 활성화합물인 6-[3-(3,4-디메톡시벤질)아미노-2-히드록시프로폭시]카르보스티릴 또는 염이 전체조성물에 대해 0.01 내지 70중량% 함유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액.

#### 청구항 3

제1항에 있어서, DL-락트산이 활성화합물인 6-[3-(3,4-디메톡시벤질)아미노-2-히드록시프로폭시]카르보스티릴 또는 염 100중량부에 대해 1 내지 2000중량부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액.

#### 청구항 4

제3항에 있어서, DL-락트산이 활성화합물인 6-[3-(3,4-디메톡시벤질)아미노-2-히드록시프로폭시]카르보스티릴 또는 염 100중량부에 대해 10 내지 2000중량부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액.

#### 청구항 5

제3항에 있어서, DL-락트산이 활성화합물인 6-[3-(3,4-디메톡시벤질)아미노-2-히드록시프로폭시]카르보스티릴 또는 염 100중량부에 대해 20 내지 80중량부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액.

#### 청구항 6

제3항에 있어서, DL-락트산이 활성화합물인 6-[3-(3,4-디메톡시벤질)아미노-2-히드록시프로폭시]카르보스티릴 또는 염 100중량부에 대해 30 내지 60중량부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액.

※ 참고사항 :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.